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金炳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44

발의연월일: 2021. 4. 30.

발 의 자:金炳旭・추경호・양정숙

배준영 • 백종헌 • 곽상도

조수진 • 주호영 • 황보승희

이채익 • 류성걸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특정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등"이라 함) 등은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 소속의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이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정비사업시 행자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장과의 협약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 고, 학교장의 협약서가 없으면 평가가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이 교수나 교원, 강사 또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건축 분야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균형 있는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제5호 및 제6조제5항 신설등).

법률 제 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등"을 "및 학교장의 의견 수렴 절차 등"으로 한다.

⑤ 교육감은 제1항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 평가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학교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5항에"를 "제6조제6항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장 의견 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3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5.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u>5.</u> (생 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⑤</u> 교육감은 제1항제4호·제5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
	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하기 위해
	서는 관련된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u>⑤</u> ~ <u>⑦</u> (생 략)	<u>⑥</u> ~ <u>⑧</u> (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	9
목・절차・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u>등</u> 그 밖에 필요한	및 학교장의 의견 수렴 절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차</u>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제7조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1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	
행자"라 한다)는 그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	
과 <u>제6조제5항에</u> 따른 조치결	
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2

<u>차 등</u>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①	
<u>제6조제6항에</u>	
② ~ ⑤ (현행과 같음)	